

사전결정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① 설계자	성명(법인명)		사무소명	
	(서명 또는 인)			
	전화번호			
대지조건	대지위치		② 지번	
	지역		지구	
	지목		면적 m²	
③ 용도	주용도		부속용도	
	용도별 면적	용도명	면적 m²	
		용도명	면적 m²	
		용도명	면적 m²	
규모	④ 건축면적 m²		⑤ 연면적 합계 m²	
	⑥ 건폐율 %		⑦ 용적률 %	
	층수	지상 층,	지하 층	건축물 최고높이 m
⑧ 구조				
주차장 규모		면적 m²,	대수	대
⑨ 주택형태			세대수	세대

일괄처리내용

• 건축위원회 심의	[]유	[]무	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대책	[]유	[]무
• 사전환경성검토협의	[]유	[]무	• 개발행위허가	[]유	[]무
•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	[]유	[]무	• 농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	[]유	[]무
• 하천점용허가	[]유	[]무			

「건축법」 제10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안내

<p>첨부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(「건축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(「건축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) 3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(「건축법」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「건축법」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중 건축계획서(에너지절약계획서,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합니다) 및 배치도(조경계획은 제외합니다) 	<p>수수료 없음</p>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

근거법규

<p>「건축법」 제10조 제1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유의사항

<p>「건축법」 제10조 제8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방법

- ① “설계자”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「건축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.
- ② “지반”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반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반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용합니다.
- ③ “용도”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으며, “부속용도”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.
 1. 건축물의 설비, 대피, 위생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
 2. 사무, 작업, 집회, 물품저장, 주차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
 3. 구내식당·직장보육시설·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, 구내소각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
 4.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
- ④ “건축면적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.
- ⑤ “연면적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합니다.
- ⑥ “건폐율”은 「건축법」 제55조에 따라 건축면적 ÷ 대지면적 × 100(%)으로 합니다.
- ⑦ “용적률”은 「건축법」 제56조에 따라 연면적(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하며, 지하층의 면적,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, 초고층·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,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) ÷ 대지면적 × 100(%)으로 합니다.
- ⑧ “구조”는 목조·조적조·철근콘크리트조·철골조·철골철근콘크리트조·기타로 적되,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용합니다.
- ⑨ “주택형태”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로 구분하여 적으며, 세대수는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의 세대(가구)수를 적용합니다.